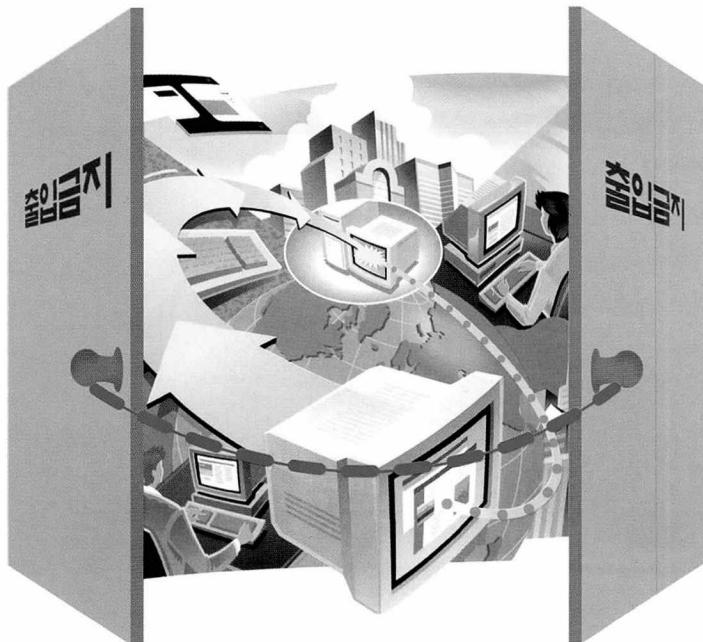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김정우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머릿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사장은 최근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선전, 회원수가 일주일 동안에 수십배가 늘어나고 매출액이 100배로 늘어나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제 나도 뜨는구나, 내 회사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보통신부와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나왔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옆집의 이사장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기에 팔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사장이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위의 사례는 조금 과장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이다.

인터넷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3월 부산의 모 이동통신회사 지점의 직원이 고객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친구에게 유출해 그 친구가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이용자가 2000년 5월말 현재 1,500만명에 육박한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출하거나 오·남용하지는 않는가이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처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국의 규제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규제방식은 크게 미국과 일본에서 중시되는 민간 협회 등을 통한 자율 규제방식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법적 규제 방식이 있다. OECD에서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발표한 이래 1999년 각료회의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협조를 하자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EU는 1999년에 EU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는 전자상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OECD에서도 향후 WTO의 주요협상의제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한 세계시장의 개척을 위해 국내의 온라인사업자 등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자율규제와 법적규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자율 규제측면을 보면, 1999년 5월부터 정보통신관련 민간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쇼핑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소비자보호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해 주는 “인터넷모범상점인증제도”를 실시했으며, 이 협회는 인증제도를 쇼핑몰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전반으로 확대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제 축인 법적 규제측면을 보자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간분야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개정해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금년 1월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11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6월1일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침해시의 보다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제도를 홍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해 6월1일부터 이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모두 7장 26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은 크게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관련의 무 사항을 온라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알기 쉽게 서술한 내용과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관련 불만처리, 분쟁조정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향후 정책 방향

지난 5월까지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신고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처벌 조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안에 정보통신망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환수하고 ② 인터넷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 징역에서 대폭 강화하고, ③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④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그 조정결과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민간중심의 인터넷안전마크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온라인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감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민간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을 유도해 자율적인 규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 Information 내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

지난 5월 16일 창립해서 6월말 현재 회원 수 115개 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가전 표준 포럼이 9월과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서용희 한국통신 네트워크본부 본부장을 의장으로, 광국연 LG전자 이사와 박광준 테크노빌리지 부사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인터넷정보가전 표준 포럼은 지난 1월 사실 표준화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MIC)하고, 3월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4월 표준포럼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5월 표준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같은 달 16일에 표준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한국통신 도고수련관에서 홈 게이트웨이 표준화 전략수립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7월 28일에는 과총회관 중강당에서 미들웨어 및 응용 표준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표준포럼 운영위원회 개최(분기별 1회-2000. 9월, 12월), 국제 표준화 공동작업 대응방안 모색 및 해외 주요 포럼 참가,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 홈페이지 구축·운영, 분과위원회/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터넷 정보가전 관련 표준 규격 개발 및 적용 추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